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안)

제정 2018. 01. 23.
개정 2019. 08. 26.
개정 2023. 08. 17.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심판위원회 및 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등록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정과 대한체육회 심판규정이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심판 선발,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각종 대회 및 경기의 지원, 심판의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이하
3.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 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본 협회 심판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위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1.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정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2조(심판등록 구분) 심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2. 국제심판(국제심판은 아시아협회 및 세계협회의 구성과 관계 규정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제13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협회 규정 제26조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제9호의 사유를 제외한다)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4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 및 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및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해당 단체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 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6조(교육실시)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해당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17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협회의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18조(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제18조의2(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이 제18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1)를 대한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2)를 대한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대한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의3(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18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협회는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제20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해당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규정 및 규칙', 또는 체육회의'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를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2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3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심판매뉴얼)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5조(규칙에 위임) 심판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심판 기피신청서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신청인	성명:
	구분: □ 선수 □ 지도자 □ 선수관리담당자 (신청인 신분 √ 체크)
기피 심판	

기피 사유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의2(심판의 기피)제2항에 따라, 심판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정	→	결과알림
신청인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297㎜[백상지 80g/㎡]

[별표2]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기피당한 심판)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소명 내용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의2(심판의 기피)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처리 절차

의견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정	→	결과알림
기피당한 심판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297㎜[백상지 80g/㎡]